디더블유에스 코리아 채권투자신탁 1-1호

투 자 설 명 서

"동 펀드는 기준일 현재 환매중지 상태로,

더 이상의 추가 판매(설정)은 불가합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디더블유에스 코리아 채권투자신탁 1-1호"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거하여 '디더블유에스자산운용'이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위험, 주된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투자방침, 가입방법, 투자금 회수 방법, 관련 보수 및 수수료, 과세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더블유에스 코리아 채권투자신탁 1-1호

투자신탁명	**디더블유에스 코리아 채권투자신탁 1-1 호**
자산운용회사명	**디더블유에스자산운용㈜**

판매회사명 및 상담가능 전화번호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경남은행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	1600-8585
상상인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1	1600-0900
교보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1544-0900
iM뱅크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1588-7171
대신증권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3 대신파이낸스센터	1588-4488
DB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2	1588-4200
유안타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9	1588-2600
메리츠종금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1588-3400
미래에셋증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1588-6800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35	1588-1111
유진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1588-6300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1577-8000
하나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1588-3111
iM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iM증권빌딩	1588-7171
한국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1544-5000
한화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080-851-8282
KB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50	1588-6611
현대차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1588-6655
HSBC 은행	서울시 중구 칠패로 37	02-2004-0000
NH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여의도동, 파크원)	1544-0000

판매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합니다.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 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작성기준일	2026.10.12. (변경시행일: 2026.10.29)
투자설명서 비치,공시장소 및 인터넷 게시주소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s://funds.dws.com/kr/Home)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kofia.or.kr)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요약(핵심설명서) : 이 펀드의 주요 특징만을 파악하고 싶다면?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 이 펀드의 기본정보를 알고 싶다면?

1. 투자신탁의 개요

명칭,상품의 존속기간, 투자신탁유형, 자산운용회사, 최초설정일 등 연혁, 수탁고 추이, 해지사유

2. 투자정보

투자목적, 주요 투자전략, 주요 투자위험,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기준가격, 운용전문인력, 투자실적(연도별 수익률 추이, 연평균 수익률)

3. 수수료•보수, 과세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4.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매입, 환매, 이익 등의 분배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 이 펀드를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투자전략, 투자위험, 투자대상, 투자제한

2. 자산의 평가

자산의 평가

3.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 선정기준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 선정기준

4.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및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유의사항,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 이 펀드의 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를 알고 싶다면?

1. 자산운용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최근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운용자산규모, 운용전문인력관련 사항

2. 판매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3. 수탁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4. 일반사무관리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5. 채권평가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투자자의 권리와 공시제도에 대해 알고 싶다면?

1. 수익자의 권리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잔여재산분배,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재판관할,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공시

정기공시 및 보고서, 수시공시

<참고> 펀드 용어 정리: 본문에 기재된 단어들의 의미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핵심설명서)

Ⅰ 투자신탁의 개요(☞본문 1 쪽)

1.명칭: 디더블유에스 코리아 채권투자신탁 1-1호
(자산운용협회코드;
종류형 A: 52447, 종류형 I:52568, 종류형 P:57693, 종류형 U:59041, 종류형 C-e: 78784)
2.펀드존속기간: 추가형이어서 별도의 종료일이 없습니다
3. 분류: 채권형,추가형,개방형,종류형
4. 자산운용회사: 디더블유에스자산운용

Ⅱ 투자정보(☞본문 2~5 쪽)

구 분	주요내용
1.투자목적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 **이 투자신탁은 2008년 11월 4일 환매연기되었으며, 환매연기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환매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환매연기자산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투자한도, 투자비율 및 운용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주요투자전략	채권에의 투자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확보 동시에 각 섹터별 채권 및 금리 파생상품의 적정가치 (Fair Value)를 산정하여 추가적인 자본 이득을 취득할 수 있는 종목에 투자
3.주요투자위험	투자적격등급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권 또한 신용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권 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이 변동될 수 있음
4.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5등급 중 2등급에 해당하는 위험수준 **설정당시 이 투자신탁의 등급은 4등급이었으나, 그 후 회사채 시장의 유동성 변동과 환매연기 조치 시행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2등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험등급에 관하여 자세한 내역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준가격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를 발행 수익증권 총수로 나누어 매일 산출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s://funds.dws.com/kr/Home)에서 확인가능
6.운용전문인력	성명 / 나이 / 직위 / 운용현황(기준일 : 2026.10.12. 현재)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규모 (설정액기준)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변현수 / 55 / CIO / 3개 / 90억 / -조흥투자신탁운용 (1999.06.~2002.01.) -슈로더투자신탁운용 (2002.01.~2004.06.) -現 디더블유에스투자신탁운용 채권운용팀 ※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책임운용역입니다.
7.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최근 1 년: 25.10.13 ~ 26.10.12 / 1.85 최근 2 년: 24.10.13 ~ 26.10.12 / 1.87 최근 3 년: 23.10.13 ~ 26.10.12 / 2.07 최근 5 년: 21.10.13 ~ 26.10.12 / 1.89 설정일 이후: 03.10.13 ~ 26.10.12 / -13.18 ※상기 수익률 자료는 2026 년 10 월 12 일 기준입니다. (종류 A 기준) **※동 펀드는 환매연기 중인 펀드입니다.** ※ 이 실적은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Ⅲ 매입.환매관련정보(☞본문 6 쪽)

1. 수수료 및 보수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수익자에게 직접부과되는 수수료 1)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매입시
	환매수수료	없음	환매시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2) 및 비용	자산운용회사 보수	연 0.00%	매 1개월
	판매회사 보수 (Class A, Class I, Class P, Class U, Class C-e)	연 0.00%	
	수탁회사 보수	연 0.00%	
	일반사무관리 보수	연 0.00%	
	총 보수	연 0.00%	-
	기타 비용3)	Class A: 0.0000, Class I: 0.0000, Class P: 0.0000, Class U: 0.0000, Class C-e: 0.000	사유발생시
	총보수·비용4)	Class A: 0.0000, Class I: 0.0000, Class P: 0.0000, Class U: 0.0000, Class C-e: 0.000	-
	(동종유형 총 보수)	Class A: 0.3800, Class I: 0.0000, Class P: 0.0000, Class U: 0.2800, Class C-e: 0.2400	-
	총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Class A: 0.0000, Class I: 0.0000, Class P: 0.0000, Class U: 0.0000, Class C-e: 0.000	-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90일 미만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됩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은 환매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2009년 1월 9일자로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일반사무관리 보수를 0%로 변경되었습니다.
주3) 기타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이 투자신탁과 유사한 투자신탁의 최근 1년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추정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4) 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2. 과세: 수익자는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 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 (작성일 현재 개인 15.4%, 법인 14.0% 원천징수)을 부담합니다: 세부사항은 본문참조

3. 매입·환매절차: 이 수익증권의 매입 환매는 판매회사의 영업시간에만 가능

이 투자신탁은 2008년 11월 4일 환매연기되었으며, 기준일 현재 환매가 불가능하며, 추가 설정(매입) 역시 불가합니다.

구분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이후
매입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D — D + 1 자금납입 (5시이전) / 수익증권 매입 (D+1 기준가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D — D + 1 — D + 2 자금납입 (5시이후) / 수익증권 매입 (D+2 기준가적용)
환매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환매대금 지급 D — D + 2 환매청구 (5시이전) / 기준가격적용 환매대금지급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 지급 D — D + 3 환매청구 (5시이후) / 기준가격적용 환매대금지급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_____(점포명)_____(판매직원/취득권유인 직위 및 성명)_____(은)는 (고객성명)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 . .

판매직원/취득권유인 _____서명 또는 (인)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Ⅰ.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디더블유에스 코리아 채권투자신탁 1-1 호

자산운용협회코드; 종류형 A: 52447, 종류형 I:52568, 종류형 P:57693, 종류형 U:59041, 종류형 C-e: 78784

2. 펀드존속기간 이 상품은 추가형 상품으로 종료일이 따로 없습니다.

3. 분류 증권간접투자기구, 채권형, 종류형, 개방형, 추가형

4. 자산운용회사 디더블유에스자산운용㈜

5. 최초설정일 및 연혁

2003.10.13. 설정

2008.11.4. 환매연기

2009.1.9 약관변경 <환매연기 후속조치>

2019.1.2 사명변경에 따른 펀드명 변경

변경전 : 도이치 코리아 채권투자신탁 1-1 호

변경후 : 디더블유에스 코리아 채권투자신탁 1-1 호

사명변경: (전) 도이치자산운용㈜ → (후) 디더블유에스자산운용㈜ (2019.01.01)

6. 수탁고 추이

(단위:억원/ 2026.10.12 기준)

연 도	현재	6 개월전	1 년전	1 년 6 개월 전	2 년전	2 년 6 개월 전	3 년전
	26.10.12	26.04.12	25.10.12	25.04.12	24.10.12	24.04.12	23.10.12
수탁고	4	4	4	4	4	4	4

*** 동 펀드는 환매 중지 상태로, 추가 설정 및 환매가 불가합니다.**

7. 해지사유 자산운용회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1 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3)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8. 기타 "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합니다. 단, 2008 년 11 월 3 일을 기준으로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디더블유에스 코리아 채권투자신탁 1-1"의 수익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Ⅱ. 투자정보

1. 투자목적

국내채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

이 투자신탁은 2008 년 11 월 4 일 환매연기되었으며, 환매연기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환매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환매연기자산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투자한도, 투자비율 및 운용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존 투자 목적 :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와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 등을 포함)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40% 이하는 CD 나 기업어음 등 유동성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또한,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거나 금리 변동시 차익취득을 목적으로 CD 금리선물, 국채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및 국채선물옵션에 투자하고 금리스왑거래를 활용하는 상품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운용실적이 변동하는 실적 배당형입니다.

2. 주요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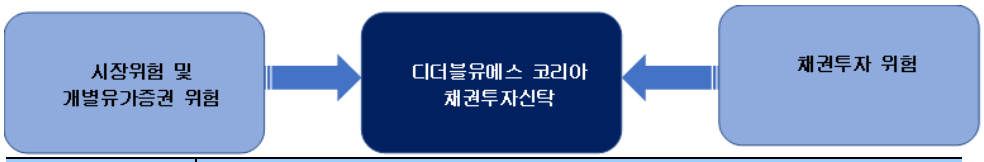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확보하면서 추가적인 자본이익을 추구

채권에의 투자는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확보하면서 각 섹터별 채권 및 금리 파생상품의 적정가치(Fair value)를 산정하여 추가적인 자본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합니다. 투자적격 등급의 채권을 대상으로 내부심사를 거쳐 선정함. 기본적으로 기업분석에 의한 철저한 Bottom-up 방식에 의해 저평가된 종목투자에 주력하며, 거시경제 및 시장동향에 바탕을 둔 Top-down 방식도 참조합니다. 또한 체계적인 거시, 미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하여 투자위험으로부터 고객의 재산을 보호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2008 년 11 월 4 일 환매연기되었으며, 환매연기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환매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환매연기자산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투자한도, 투자비율 및 운용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투자전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투자전략 및 투자위험'중 '1.투자전략'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투자위험



구 분	주 요 내 용
채권투자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채권 등에 투자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동 및 시중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투자채권의 가치변동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채에 투자할 경우, 해당종목의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은 신용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침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신탁재산을 주로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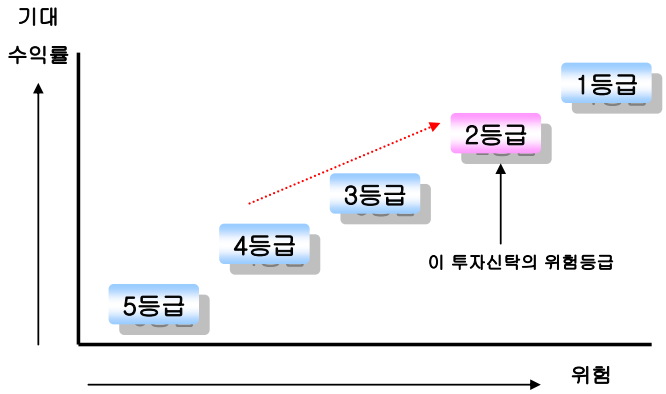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격은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운용에 의한 손익은 모두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투자전략 및 투자위험'중 '2.투자위험'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며 정기예금 금리를 초과하는 투자수익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투자를 추구하면서 정기예금 금리 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하지만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채권시장에서 비효율적으로 가격이 형성된 채권 종목이나 내재가치 대비 현저하게 저평가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채권종목에 투자하는 적극적인 운용을 적용하는 가치투자 추구형 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가입을 희망하는 고객은 사전에 이 투자신탁의 이러한 특징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분류



급	자산운용사의 운용중인 투자신탁 상품 (예시)
1 등급	해당사항 없음
2 등급	해당사항 없음
3 등급	해당사항 없음
4 등급	해당사항 없음
5 등급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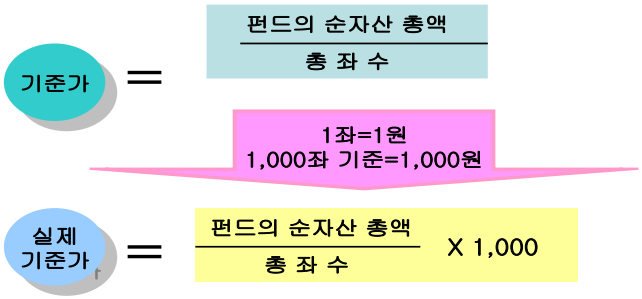
※ 동 투자신탁은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간접투자재 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65조, 시행령 제62조 제2호 가목에 의거 2008년 11월 4일부터 별도의 공지일까지 환매연기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설정 당시 동 투자신탁의 등급은 4등급이었으나, 최근 회사채 시장의 유동성 변동과 상기 환매연기 조치 시행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4등급에서 2등급(높은위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5.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당해 종류 수익증권]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Class 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 간 판매 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운용회사(www.deam-korea.com)·판매회사, 자산운용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이 투자신탁은 펀드에 부과되는 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수익자의 투자성향에 부합하도록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판매회사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투자신탁은 2008년 11월 4일 환매연기 조치에 따라 2009년 1월 9일 약관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의 공고 및 게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하며, 2008년 11월 3일을 기준으로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디더블유에스 코리아 채권투자신탁 1-1"의 수익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6. 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기준일 : 2026.10.12 현재)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설정액기준)	
변현수	55	CIO	3개	90억	-조흥투자신탁운용 (1999.06.~2002.01.) -슈로더투자신탁운용 (2002.01.~2004.06.) -現디더블유에스투자신탁운용 채권운용팀

※ 상기인은 동 투자신탁의 책임운용역입니다.

7. 투자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자산운용협회 (http://www.kofia.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평균 수익률 (단위:%)

기간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 이후
	25.10.13 ~ 26.10.12	24.10.13 ~ 26.10.12	23.10.13 ~ 26.10.12	21.10.13 ~ 26.10.12	03.10.13 ~ 26.10.12
종류 A	1.84	1.87	2.07	1.89	-12.06
종류 C-e	1.84	1.87	2.06	1.89	-15.06
종류 I	1.83	1.86	2.07	1.89	-13.18
종류 P	1.85	1.87	2.07	1.89	-13.97
종류 U	1.84	1.87	2.06	1.89	-13.77

(2)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기간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4 년차	최근 5 년차
	25.10.13 ~ 26.10.12	24.10.13 ~ 25.10.12	23.10.13 ~ 24.10.12	22.10.13 ~ 23.10.12	21.10.13 ~ 22.10.12
종류 A	1.84	1.90	2.46	2.43	0.82
종류 C-e	1.84	1.90	2.45	2.42	0.82
종류 I	1.83	1.89	2.48	2.42	0.83
종류 P	1.85	1.88	2.46	2.41	0.85
종류 U	1.84	1.90	2.45	2.42	0.85

※ 동 펀드는 환매연기 중인 펀드입니다.

Ⅲ.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가 직접 부담하는 수수료[1)]

구분	지급비율(연간,%)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ClassA, I, P, C-e:해당사항 없음 ClassU: 0.00%	납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Class A, I, P, C-e 수익증권: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90 일 이상: 없음	환매시
	Class U 수익증권: 없음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90일 미만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됩니다.

2. 투자신탁이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1] 및 비용	자산운용회사 보수		연 0.00%	매 1개월
	판매회사 보수	Class A	연 0.00%	
		Class I	연 0.00%	
		Class P	연 0.00%	
		Class U	연 0.00%	
		Class C-e	연 0.00%	
	수탁회사 보수		연 0.00%	
	일반사무관리 수		연 0.00%	
	총 보수		연 0.00%	-
	기타 비용[2]		Class A: 0.0000, Class I: 0.0000, Class P: 0.0000, Class U: 0.0000, Class C-e: 0.000	사유발생시
	총보수·비용[3]		Class A: 0.0000, Class I: 0.0000, Class P: 0.0000, Class U: 0.0000, Class C-e: 0.000	-
	(동종유형 총 보수)		Class A: 0.3800, Class I: 0.0000, Class P: 0.0000, Class U: 0.2800, Class C-e: 0.2400	-
	총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Class A: 0.0000, Class I: 0.0000, Class P: 0.0000, Class U: 0.0000, Class C-e: 0.000	-

주1) 이 투자신탁은 환매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2009년 1월 9일자로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일반사무관리 보수를 0%로 변경합니다.
주2) 기타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이 투자신탁과 유사한 투자신탁의 최근 1년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추정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3) 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종류(Class)는 가입조건에 따라 구분됩니다.

구분	기준
종류(Class) A	제한없음
종류(Class) I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간접투자기구
종류(Class) P	근로자급여퇴직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에 한함.
종류(Class) U	제한없음 (선취판매수수료 부과)
종류(Class) C-e	판매회사의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가입한 자

3.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다만, 2025 년 1 월 1 일 이후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이익 지급시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합니다. (※ 2024 년말까지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은 투자신탁에서 환급 받아 세전기준가로 환원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

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15.4% (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이 투자신탁은 2008년 11월 4일 환매연기되었으며, 기준일 현재 환매가 불가능하며, 추가 설정(매입) 역시 불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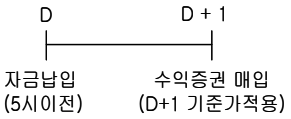
1. 매입

(1) 매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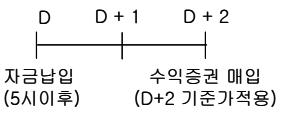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17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발표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



(나) 오후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단,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과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1. 매입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17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나) 오후 17시 이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 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2. 환매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의 보유 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분	지급비율(연평균가액의 %)		부과 시기
	CLASS U	CLASS A, I, P, C-e	
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없음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90일 이상 – 없음	환매시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구 및 환매 청구가 17 시[오후 5 시] 이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에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3.이익 등의 분배

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Ⅰ.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확보하면서 추가적인 자본이익을 추구

채권에의 투자는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확보하면서 각 섹터별 채권 및 금리 파생상품의 적정가치(Fair value)를 산정하여 추가적인 자본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합니다. 투자적격 등급의 채권을 대상으로 내부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업분석에 의한 철저한 Bottom-up 방식에 의해 저평가된 종목투자에 주력하며, 거시경제 및 시장동향에 바탕을 둔 Top-down 방식도 참조합니다. 체계적인 거시, 미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하여 투자위험으로부터 고객의 재산을 보호합니다.

주요 투자대상 및 투자계획

1) **채권부문** : 국내채권 중, 국공채, 통안증권, 은행채, 회사채(BBB 등급이상) 등에 신탁재산의 60% 이상 투자할 방침입니다.

2) **유동성 자산등** : 수익증권의 원활한 환매 등을 위하여 투자신탁재산의 일정부분은 기업어음(CP), 콜론, 금융기관에의 예치, 단기대출 등의 방법으로 투자할 방침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2008 년 11 월 4 일 환매연기되었으며, 환매연기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환매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환매연기자산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투자한도, 투자비율 및 운용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투자위험

(1)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여,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구분	주 요 내 용
원금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위탁회사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채권투자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채권 등에 투자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동 및 시중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투자채권의 가치변동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채에 투자할 경우, 해당종목의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은 신용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침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 위험	신탁재산을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타위험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등에 따라 운용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3. 투자대상

***투자비율은 신탁재산 총액에 대비하여 산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합니다.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내용
채권	60% 이상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및 사모사채권을 포함합니다.
어음	40% 이하	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인 어음에 투자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95%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에 투자합니다.
수익증권	5% 이하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합니다.
금리스왑거래	100% 이하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투자증권대여	50% 이하	투자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합니다.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15%이하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거래는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5%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50%이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100분의 50이하로 합니다.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연기자산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투자한도 및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약관변경 시행일 2009년 1월 9일)

4. 투자제한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77조에서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또는 채무증서, 동조항의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에 한한다.) 또는 채무증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것에 한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4.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5.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6.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7. 이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8. 사모사채를 간접투자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로 또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등급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을 말한다)의 차상위등급(신용평가등급 A를 말한다) 미만인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행위

②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7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 이 조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1월간은 제37조제1항제7호 및 이 조 제1항제2호본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약관변경 시행일 2009년 1월 9일)

Ⅱ. 자산의 평가

1.자산의 평가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산의 종류형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계산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산	평 가 방 법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협회에 등록된 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 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장내 파생상품	당해 거래소 시장의 최종 시가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투자증권 거래	①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 2.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②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의 판매를 조건으로 매매주문을 위탁하기로 약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중개회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관계회사등에 대하여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우대하여서는 아니된다.
장내파생상품 거래	투자증권 거래와 같음

IV. 매입• 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매입관련 유의사항 특이사항 없음

2. 환매관련 유의사항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직접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2)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동 투자신탁은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간접투자재 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 65 조, 시행령 제 62 조 제 2 호 가목에 의거 2008 년 11 월 4 일부터 별도의 공지일까지 환매연기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법령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① 또는 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①약관 제 21 조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사유

가.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사유

가. 투자증권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 주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

1.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2. 환매연기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 및 환매재개시 환매금의 지급방법

3. 부분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의 처리방법

③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다.

④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⑤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금의 지급방법

⑥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을 지급한다.

1.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수익자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금 지급

2.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자산운용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 지급.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연기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 1 항,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그 통지를 증권예탁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⑧제 6 항에 따라 자산운용회사는 환매연기자산 등의 매각 또는 만기보유 등으로 발생한 현금(이하" 분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21 조 내지 제 25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급액: 발생한 분배금 중 자산운용회사가 지급키로 정한 금액으로 하며, 수익증권 좌수 보유비율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

2. 지급일: 자산운용회사가 정한 날

3. 자산운용회사가 분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분배금 지급일 이전 제 1 영업일까지 분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한다.

3. 이익 분배등 관련 유의사항

(3)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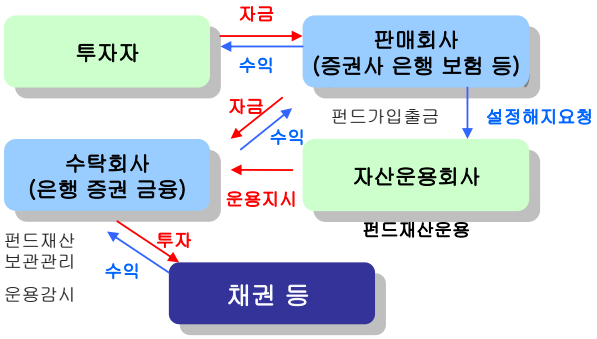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간접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자산 등의 매각 또는 만기보유 등으로 발생한 현금(이하" 분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역은 IV. 매입• 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2. 환매관련 유의사항 (2)수익증권의 환매연기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펀드의 운용구조



Ⅰ.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디더블유에스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26 (공평동) 센트로폴리스 A 동 11 층, 03161 02)724-7400

2.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2) 자산운용회사의 의무와 책임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최근 사업년도의 요약 재무내용

	2024	2025	2026.06
자산총계	29,534,223,992	32,323,332,896	29,381,084,601
부채총계	7,743,689,020	8,137,734,873	5,664,310,943
자본총계	21,790,534,972	24,185,598,023	23,716,773,658
당기순이익	-1,231,741,674	2,322,201,412	-461,989,475
ROE	-5.53%	3.88%	-9.22%
ROA	-3.71%	2.96%	-7.13%
자기자본비율	73.78%	72.71%	80.55%
부채비율	35.54%	33.65%	23.88%

4.운용자산규모

[2026.10.12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및부동산파생	특별자산및특별자산파생	혼합자산및혼합자산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0	86	33	0	4,619	0	0	3,626	0	0	0	8,364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기준일 : 2026.10.12 현재)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설정액기준)	
변현수	55	CIO	3개	90억	-조흥투자신탁운용 (1999.06.~2002.01.) -슈로더투자신탁운용 (2002.01.~2004.06.) -現 디더블유에스투자신탁운용 채권운용팀

※ 상기인은 동 투자신탁의 책임운용역입니다.

Ⅱ. 판매회사

1.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경남은행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	1600-8585
상상인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1	1600-0900
교보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1544-0900
iM뱅크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1588-7171
대신증권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3 대신파이낸스센터	1588-4488
DB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2	1588-4200
유안타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9	1588-2600
메리츠종금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1588-3400
미래에셋증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1588-6800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35	1588-1111
유진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1588-6300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1577-8000
하나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1588-3111
iM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iM증권빌딩	1588-7171
한국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1544-5000
한화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080-851-8282
KB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50	1588-6611
현대차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1588-6655
HSBC 은행	서울시 중구 칠패로 37	02-2004-0000
NH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여의도동, 파크원)	1544-0000

* 회사 연혁은 각 판매사 홈페이지 참고

2.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 환매업무
- 수익증권 교부업무/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와 원천징수업무
- 각종장부 및 서류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및 공고 업무 등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2) 판매회사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동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②판매회사의 임직원 및 취득권유인은 법제57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책임) 판매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Ⅲ. 수탁회사

1.회사의 개요

회사명	㈜우리은행
주소	서울 중구 회현동 1 가 203
전화번호	02-2002-3000
홈페이지	www.wooribank.com

2.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등

(2) 수탁회사의 의무 및 책임

(의무) ① 수탁회사 간접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약관,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수탁회사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간접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자산운용회사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수탁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탁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Ⅳ. 일반사무관리회사

1.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펀드파트너스 (주)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 길 28
연락처	02- 2168-0400
회사연혁	설립일: 2000 년 6 월 15 일

2.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자산운용회사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Ⅴ.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 자산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화재보험협회빌딩 4층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11층 (현대빌딩)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11 (여의도동) 9층

2.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4 부. 수익자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Ⅰ.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1)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이 때,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수익자총회는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의 요청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며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의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수익자총회 의결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수탁회사의 변경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2.잔여재산분배

- 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 하지 못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자산매매거래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 영업연도의 결산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건전성• 수익성 및 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영업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2) 자산운용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하나, 간접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 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투자신탁은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후속조치에 따른 약관변경 사항)

(3) 수탁회사보고서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투자신탁은 수탁회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후속조치에 따른 약관변경 사항)

(4) 약관변경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신탁약관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컴퓨터통신을 통한 1회 이상 공고

신탁약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5) 기타장부서류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1) 수시공시 등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 (www.dws-korea.com),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합니다.- 운용전문

인력의 변경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단,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의 법령이 정하는 사항

(2) 의결권 행사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참고	펀드용어정리
용 어	내 용
개방형 (간접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설정	신탁약관에 의거,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수탁회사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성과보수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발생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펀드의 수익자 회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2003년 10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면서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입니다.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자산운용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운용협회 펀드 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자산운용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종류형(간접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주식형(간접투자기구)	약관(정관)상 주식에 간접투자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증권투자신탁	간접투자재산의 40% 이상을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추가형(간접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해지	투자신탁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디더블유에스 코리아 채권투자신탁 1-1호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투자신탁 명칭: _____

□판 매 일 : _____

□투자자 확인 사항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_____그 주요내용을 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